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주)신한저축은행

건명 : 한성산업개발(주) 담보물

감정평가서 번호 : 하나 251222-00-03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HANA Appraisal & Advisory Co.,Ltd.

Tel : 02-2182-8000 Fax : 02-558-044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양재동) 서울오토갤러리 금관 5층

건명	한성산업개발(주) 담보물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담당평가사	감정평가사 : 박은정 T : 010-7644-3388
현장조사자	현장조사자 : 황영준 T : 010-3658-6218
접수,발송직원	접수,발송직원 : 김종순 T : 02)2149-2241
수수료(세금계산서) 담당직원	세금계산서 직원 : 강다정 T : (02)2182-8006

(주) 하나 감정 평가 법인

감정평가 심사인증서

인증서 번호	20251224-00-037	심 의 일	2025-12-24
감정서번호	하나 251222-00-039	평 가 목 적	담보
평가 의뢰인	(주)신한저축은행		
건 명	한성산업개발(주) 담보물		
물건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감정평가액	₩6,699,270,000.-		

(주)하나감정평가법인의 심사운영규정 제25조의 3 또는 제31조에 해당하여 본사 심사실(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임을 확인합니다.

가 격 심 의 위 원 회



감정평가 심사업무가 제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기에 감정평가 심사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 하나 감정 평가 법인

대 표 이 사 김 도 곤



감정평가 심사의견서

당 감정평가 심사자는 "한성산업개발(주) 담보물" 건명의 감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당법인 감정평가 심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정 평가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 (공통) 감정평가 심사자는 당해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적용된 평가방법, 주요 가정, 평가조건, 평가사례 및 거래가액 등의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감정평가 심사자는 당해 토지의 평가에 있어 적용된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감정평가 심사자는 당해 토지의 평가에 있어 적용된 개별요인 비교치의 적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개별요인 비교치 적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토지) 감정평가 심사자는 당해 토지의 평가에 있어 적용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2.290 적용되었으며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토지) 감정평가 심사자는 당해 토지의 평가에 있어 고려한 거래사례(평가사례)를 확인 하였으며, 대체로 감정평가금액과 거래사례(평가사례) 간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건물) 감정평가 심사자는 당해 건물의 평가를 위해 적용된 재조달 원가 및 부대설비 보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적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재조달원가 최고치()

본 심사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한성산업개발(주) 담보물" 건명 의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심사 담당 감정평가사

HANA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평가물건총괄표

1. 감정평가 물건내역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평가목적	담보	물건의 종류	토지
소유자	한성산업개발(주), 대릉산업개발(주) [수탁자 : 우리자산신탁(주)]	채무자	한성산업개발(주)

2. 감정평가액

감정평가금액	구분	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비고
		공부	사정		
	토지	5,010	4,627	6,699,270,000	-
			383	감정평가 외	현황'도로' 등
	합계			₩6,699,270,000.-	-

3. 권리내역

권리내용	금액 (원)	비고
근저당권	-	-
전세권	-	-
지상권	-	-
압류, 기타	-	-

4. 임대내역

구분	총 임대보증금(원)	총 월 임대료(원)	비고
전체	-	-	후면 '전입세대 및 임대차 조사보고서 등' 참조

5. 담보물 종합의견

본건은 담보로서의 환가성, 안정성 등과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고하여 결정하였음.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김도곤



감정평가사

박은정

박은정 (인)



감정평가액	육십육억구천구백이십칠만원정 (₩6,699,270,000.-)			
의뢰인	(주)신한저축은행	감정평가 목적	담보	
제출처	(주)신한저축은행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한성산업개발(주), 대룡산업개발(주)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채무자	한성산업개발(주)	2025. 12. 23	2025. 12. 23	2025. 12. 23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평	토지	5,010	토지	4,627	-	6,699,270,000
				383	-	감정평가 외
가						
내		이	하	여	백	
용						
	합계					₩6,699,270,000.-

심사확인

심사자
감정평가사

허재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신한저축은행의 담보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12월 23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12월 23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기준시점 현재 본건 전체 별다른 임대관계는 조사되지 아니한 바, 추후 담보취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1)~(9)는 아래와 같이 2011년 09월 07일자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 되었는데, 본건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되, 해당 면적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홍수관리구역에 해당되어 지적도 등에 기초하여 개략적으로 면적 (약 1,150㎡)을 산출하여 구분 평가하였음.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구분	허가/신고사항변경 (변경차수 : 4)	허가번호	2000-도시과-신축허가-98
건축주	백금희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8필지		
대지면적	4,627㎡		
건축물명	백금희씨공동주택 (연립주택)신축공사	주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
건축면적	992.91㎡	건폐율	19.94%
연면적합계	10,139.17㎡	용적률	79.24%

(출처: 의뢰인 측 제시 자료)

※ 가평군청 공동주택팀, 건축민원팀, 주택민원팀(031-580-4779) 문의 결과 본건에 대한 건축허가(최초 허가신고번호 : 2000-도시과-신축허가-98)는 기준시점 현재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② 일련번호(10),(11)은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12)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류)로 일부는 현황 '도로'인 바 담보가치가 희박하여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음.
- ③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ㄱ) 콘크리트구조물(공사중단상태, 약 300m³)이 소재하나, 귀 행과 협의하여 이에 구매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추후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대	자연녹지지역	321	3,477	1,510,000	5,250,270,000	일단지, 건축허가득
						1,150	1,260,000	1,449,000,000	홍수관리 구역 저축 부분
2	상동	447-10	도로	자연녹지지역	212				
3	상동	447-11	임야	자연녹지지역	1,131				
4	상동	447-13	도로	자연녹지지역	379				
5	상동	447-14	임야	자연녹지지역	908				
6	상동	447-16	도로	자연녹지지역	835				
7	상동	447-19	임야	자연녹지지역	243				
8	상동	447-20	임야	자연녹지지역	343				
9	상동	447-26	임야	자연녹지지역	255				
10	상동	447-12	임야	자연녹지지역	39	39	-	감정평가 외	현황 도로
11	상동	447-22	임야	자연녹지지역	6	6	-	감정평가 외	현황 도로
12	상동	447-23	도로	자연녹지지역	338	338	-	감정평가 외	일부 현황 도로 등
합 계								₩6,699,27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토 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주거나지, 도로
	지 목	대, 도로, 임야
	면 적	5,010 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설악면 회곡리 447-7	321	대	주거나지	자연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완경사지	493,700
2	설악면 회곡리 447-10	212	도로		자연녹지			-
3	설악면 회곡리 447-11	1,131	임야		자연녹지			709,700
4	설악면 회곡리 447-13	379	도로		자연녹지			-
5	설악면 회곡리 447-14	908	임야		자연녹지			709,700
6	설악면 회곡리 447-16	835	도로		자연녹지			-
7	설악면 회곡리 447-19	243	임야		자연녹지			708,100
8	설악면 회곡리 447-20	343	임야		자연녹지			33,500
9	설악면 회곡리 447-26	255	임야		자연녹지			26,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0	설악면 회곡리 447-12	39	임야	도로등	자연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7,420
11	설악면 회곡리 447-22	6	임야	도로등	자연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709,700
12	설악면 회곡리 447-23	338	도로	도로등	자연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

※ 일련번호(2),(4),(6),(12)의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지 않음.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II. 기타참고사항 - 3. 기타 참고사항'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m ²)	비고
A	설악면 회곡리 447-4	714 (일단지)	대	상업용	자연녹지	소로한면	정방형 평지	821,500	일단지면적 820m ²

※ 일련번호 A는 설악면 회곡리 447-15번지와 일단지임.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고
#A 녹지지역	1.004	경기도 가평균 (25.01.01~25.12.23) 2025.01.01 ~ 2025.10.31 : 0.864 2025.10.01 ~ 2025.10.31 : 0.081 $(1 + 0.00864) * (1 + 0.00081 * 53/31) \approx 1.01004$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일련번호1~9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3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0.96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지목 등에서 열세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79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상업지대 [일련번호1~9 홍수관리구역 저축부분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3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0.80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지목, 홍수관리구역 저축 등에서 열세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66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m ²)	기타
인근 토지	국도변 상가지대	소로변	1,500,000-1,800,000 내외	자연녹지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 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설악면 회곡리 447-7외	4,627	자연녹지	대 주거나지	2025.06.23	담보	1,510,000	주거나지 (3,477m ²)
							1,260,000	홍수관리구역 저축 부분 (1,150m ²)

주거나지: 5,250,270,000원 / 홍수관리구역저축 부분: 1,449,000,000원 / 합계: 6,699,270,000원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2)	설악면 회곡리 480-2	1,096	자연녹지	대 상업용	2023.03.02	담보	1,860,000	-
(3)	설악면 회곡리 485-4	296	자연녹지	대 상업나지	2023.03.02	담보	1,860,000	-
(4)	설악면 회곡리 738	1,480	자연녹지	대 상업용	2023.11.17	담보	1,920,000	선정
(5)	설악면 회곡리 467-6	4,449	자연녹지	대 상업기타	2021.04.06	담보	1,870,000	-
(6)	설악면 회곡리 473-8	231	자연녹지	잡종지 주거기타	2021.08.24	시가참고	1,658,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설악면 회곡리 441-17 외	자연녹지 대/단독주택	2,300,000,000원 (@ 1,280,000원/m ²)	2023.07.14 2010.07.21	1,407m ² 544.81m ²	선정
	의견	1) 자연녹지지역 경사지붕(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200,000원/m ² X 38년/50년 ≒ 912,000원/m ² 건물가격 : 912,000원/m ² X 544.81m ² ≒ 496,866,720원 2) 토지가격 : (2,300,000,000원 - 496,866,720원) / 1,407m ² ≒ 1,280,000원/m ²				
#2	설악면 회곡리 307-5	자연녹지 대/단독주택	380,000,000원 (@ 1,530,000원/m ²)	2022.08.03 1997.11.06	174m ² 183.06m ²	-
	의견	1) 자연녹지지역 경사지붕지붕 2층 단독주택외 1 건물단가 : 1,200,000원/m ² X 26년/50년 ≒ 624,000원/m ² 건물가격 : 624,000원/m ² X 183.06m ² ≒ 114,229,440원 2) 토지가격 : (380,000,000원 - 114,229,440원) / 174m ² ≒ 1,530,000원/m ²				
#3	청평면 호명리 287-21	자연녹지 대/상업용	4,663,410,750원 (@ 1,440,000원/m ²)	2020.11.18 -	3,239m ² -	-
	의견	1) 거래후 건물이 멸실된 바, 건물가액 일체를 토지에 배분함. 2) 토지가격 : 4,663,410,750원 / 3,239m ² ≒ 1,440,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바) 경매 동향

용도별	경기 가평군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낙찰가			낙찰건		
구분	총감정가(원)	총낙찰가(원)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토지	54,593,922,335	25,038,372,208	45.9	682	88	12.9
대지	4,847,345,560	2,400,916,000	49.5	53	9	17.0
임야	28,002,125,850	13,122,003,100	46.9	360	35	9.7
기타토지	278,475,000	133,561,100	48.0	15	4	26.7
도로	52,739,000	17,440,000	33.1	6	2	33.3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1,920,000	1.02472	1.000	0.969	1,906,471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	2.297	2.29
	821,500	1.01004	-	-	829,747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4)를 선정함.

²⁾시점수정(2023.11.17 ~ 2025.12.23, 가평군 녹지지역) : 2.472% (1.02472)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4)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4)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청평역 및 상업지역중심과의 거리 및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상업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0.95	1.00	1.02	1.00	1.00	0.969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 (원/m ²)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²)							
1~9	A	821,500	1.01004	1.000	0.797	2.29	1,514,397	1,510,000	상업지대 주거나지
	A	821,500	1.01004	1.000	0.664	2.29	1,261,681	1,260,000	상업지대 홍수관리구역 저촉부분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설악면 회곡리 441-17 외	자연녹지 대/단독주택	2,300,000,000원 (@ 1,280,000원/m ²)	2023.07.14 2010.07.21	1,407m ² 544.81m ²	441-18
	의견	1) 자연녹지지역 경사지붕(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200,000원/m ² × 38년/50년 ≒ 912,000원/m ² 건물가격 : 912,000원/m ² × 544.81m ² ≒ 496,866,720원 2) 토지가격 : (2,300,000,000원 - 496,866,720원) / 1,407m ² ≒ 1,280,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녹지지역	2.733	경기도 가평균 (23.07.14~25.12.23) 2023.07.01 ~ 2023.07.31 : 0.029 2023.08.01 ~ 2023.08.31 : 0.064 2023.09.01 ~ 2023.09.30 : 0.032 2023.10.01 ~ 2023.10.31 : 0.085 2023.11.01 ~ 2023.11.30 : 0.106 2023.12.01 ~ 2023.12.31 : 0.142 2024.01.01 ~ 2024.12.31 : 1.260 2025.01.01 ~ 2025.10.31 : 0.864 2025.10.01 ~ 2025.10.31 : 0.081 $(1 + 0.00029 * 18/31) * (1 + 0.00064) * (1 + 0.00032) * (1 + 0.00085) * (1 + 0.00106) * (1 + 0.00142) * (1 + 0.01260) * (1 + 0.00864) * (1 + 0.00081 * 53/31) \approx 1.02733$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일련번호1~9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12	본건이 사례 대비 가로의 폭, 계통의 연속성 등에서 우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06	본건이 사례 대비 인근대중교통시설, 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15	본건이 사례 대비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조망 등에서 우세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9	본건이 사례 대비 깊이 등에서 우세하나 면적, 형상, 조성도 등에서 열세하여 대체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0.96	본건이 사례 대비 지목 등에서 열세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6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상업지대 [일련번호1~9 홍수관리구역저축부분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12	본건이 사례 대비 가로의 폭, 계통의 연속성 등에서 우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06	본건이 사례 대비 인근대중교통시설,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15	본건이 사례 대비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조망 등에서 우세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89	본건이 사례 대비 깊이 등에서 우세하나 면적, 형상, 조성도 등에서 열세하여 대체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0.80	본건이 사례 대비 지목, 홍수관리구역 저축 등에서 열세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97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1,280,000	1.000	1.02733	1.000	1.166	1,533,269	1,530,000
	#1	1,280,000	1.000	1.02733	1.000	0.972	1,278,162	1,280,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고
1~9	1,510,000	1,530,000	주거나지
1~9	1,260,000	1,280,000	홍수관리구역 저축부분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수요성, 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6,699,270,000 원
-------	-----	-----------------

결정의견	담보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2. 기타 참고사항

~

(토 지) 감정평가요항표

기 재 사 항	내 역
위 치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 위 환 경	본건 인근은 수상레저시설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 및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

(토 지) 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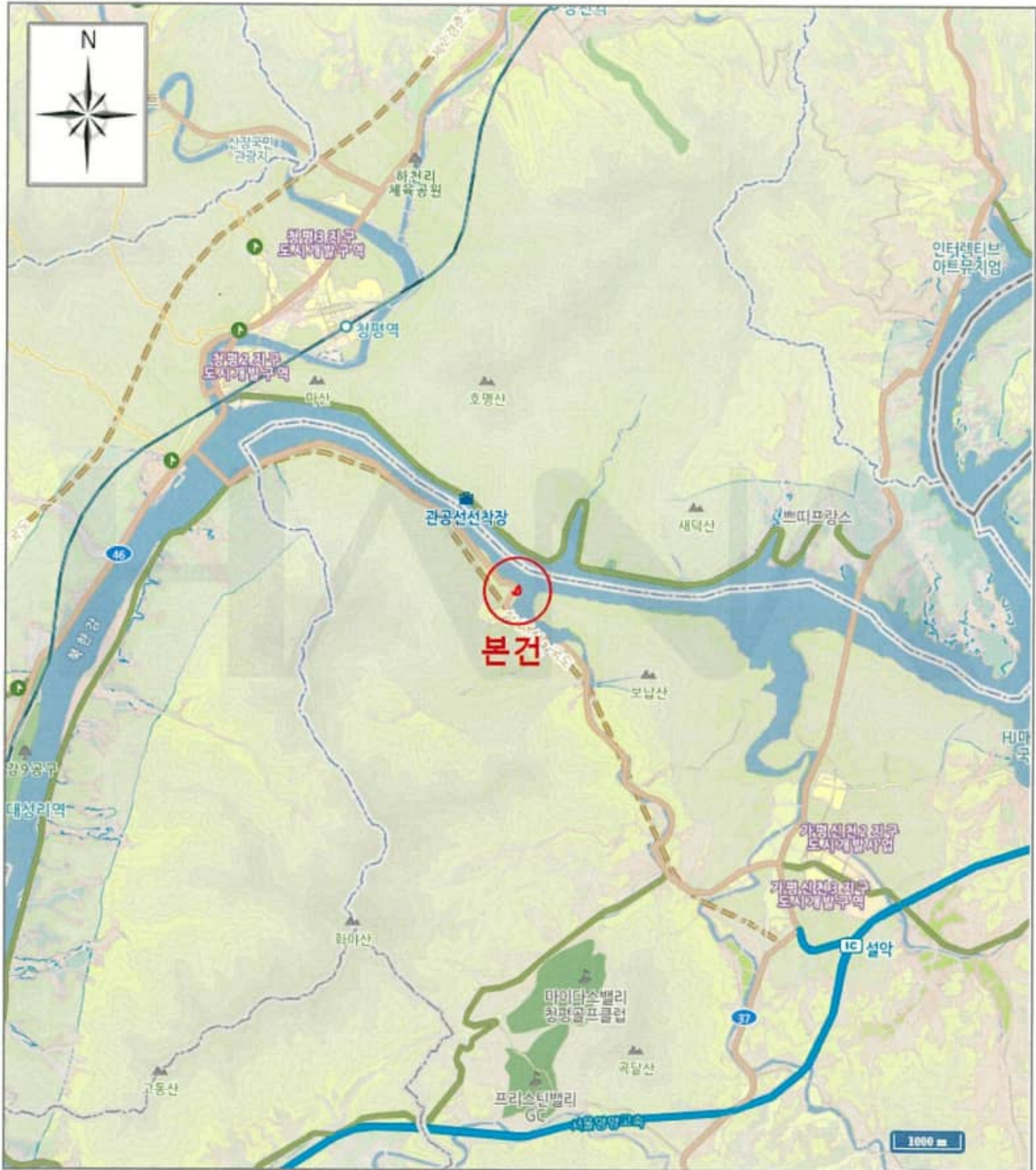
기 재 사 항	내 역
	<p>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 국가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일련번호(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토 지) 감정평가요항표

기 재 사 항	내 역
	<p>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p> <p>- 일련번호(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 (2021-09-0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p>
형세 및 이용상황	<p>- 일련번호(1)~(9): 9필지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일단지로 인접토지 및 접면도로 대비 대체로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p> <p>- 일련번호(10),(11): 인접토지 및 접면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현황 도로임.</p> <p>- 일련번호(12): 인접토지 및 접면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종로3류)로서 일부는 현황 도로임.</p>
도 로 상 태	<p>- 일련번호(1)~(9):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p> <p>- 일련번호(10),(11): 현황 도로임.</p> <p>- 일련번호(12): 도시계획시설 도로(종로3류) 및 일부 현황 도로임.</p>
제시목록외의 물건 (구조 및 규모, 이용상태, 영향)	<p>ㄱ) 일련번호(2),(3) 지상 소재 콘크리트 구조물(공사중단 상태) 약 300㎡</p> <p>※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도' 참조.</p>
공부와의 차이	-
임대사항	미상임.
기 타 사 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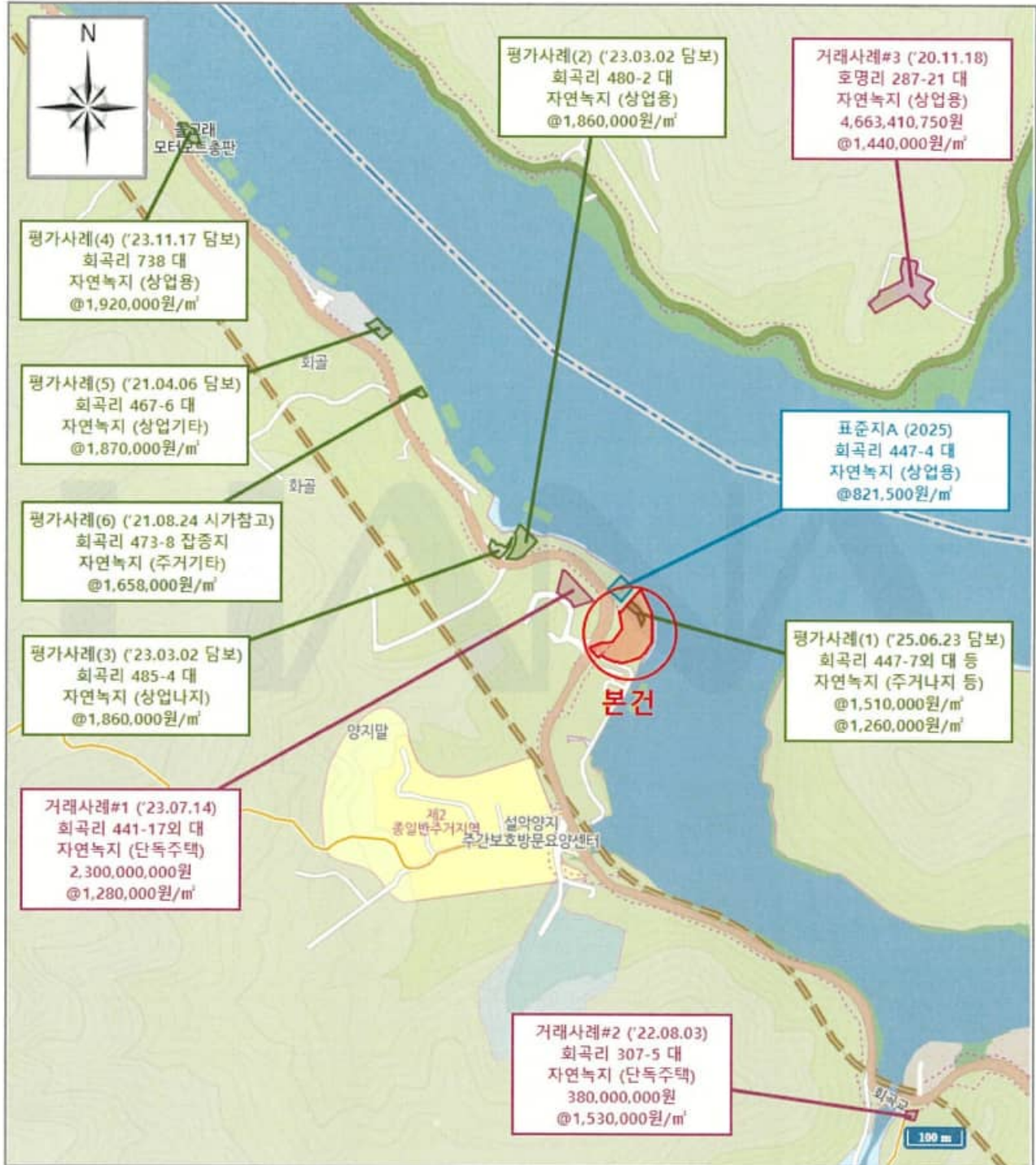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	------------------------------



가격 참고도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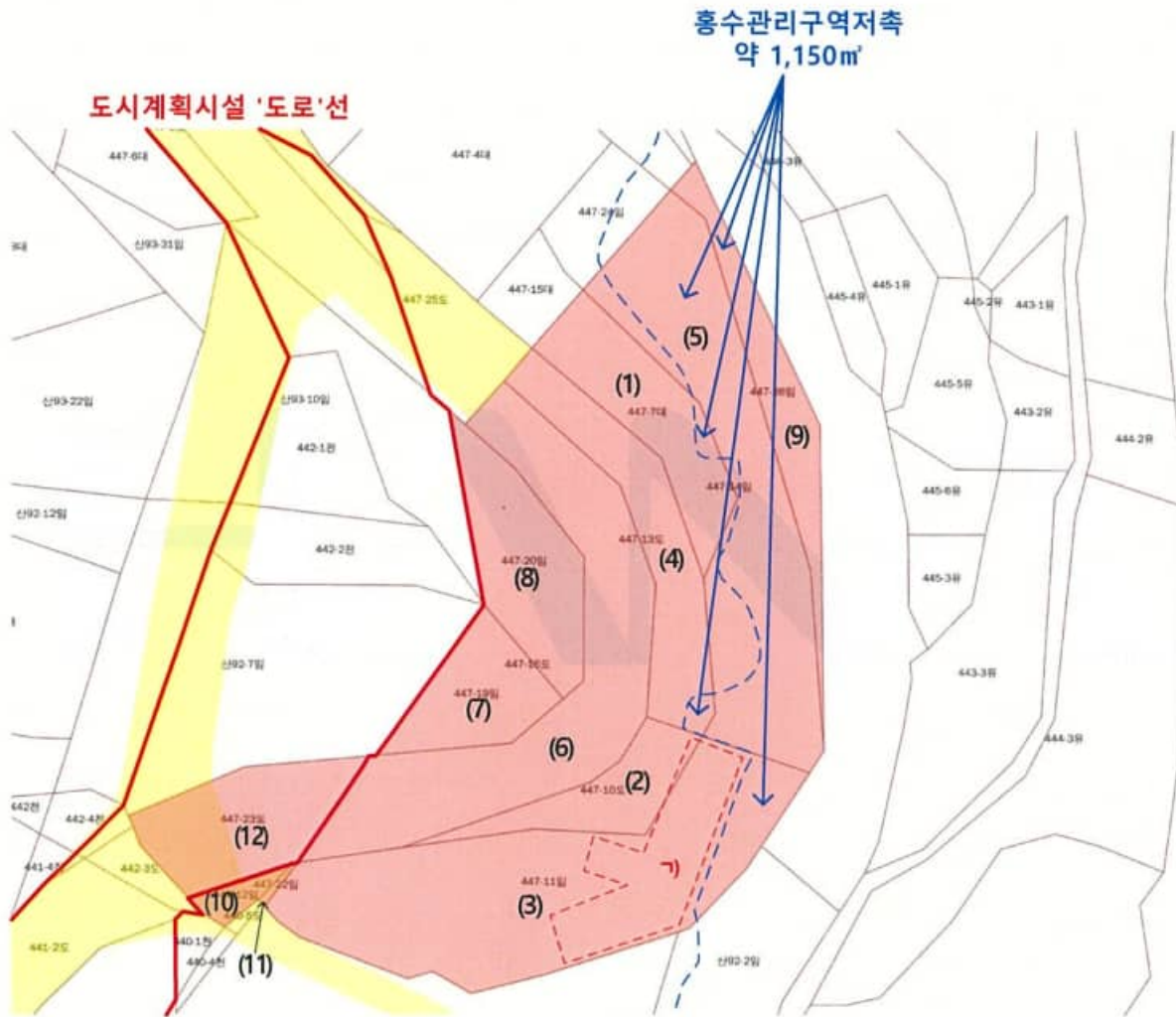


[범례]	■ 본 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	-------	-------	--------	--------

지 적 도



S : 1 / 1,000



[제시외 건물]

ㄱ) 콘크리트 구조물(공사중단상태) 약 300㎡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토 지 목 록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비고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대	321	일단지
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0	도로	212	
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1	임야	1,131	
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3	도로	379	
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4	임야	908	
6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6	도로	835	
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9	임야	243	
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20	임야	343	
9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26	임야	255	
1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12	임야	39	현황'도로' (감정평가 외)
1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22	임야	6	현황'도로' (감정평가 외)
1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23	도로	338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일부 현황'도로' (감정평가 외)
(이 하 여 백)					

전입세대 및 임대차 조사 보고서

조사일자 : 2025년 12월 23일

조사자 직위: 감정평가사 성명 : 황영준

1. 담보물 임대차 현황

임대부분	용도	면적 (m ²)	임차인	총 방수	사용 방수	임차보증금	월 임대료	조사의견 (면담자 등)
본건 전체	-	-	-	-	-	-	-	임대미상
- 이 하 여 백 -								

2. 전입세대 현황

세대주 성명	임차계약자 성명	세대주와 관계	전입일자	비고
해 당 없 음				

권리내역조사표

1. 근저당권

표시근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열람)일자 : 2025-12-23

순위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설정일자	비고
		- 해당 없음 -		

2. 전세권

순위	전세금액	전세권자	설정일자	비고
		- 해당 없음 -		

3. 지상권

순위	존속기간	지상권자	설정일자	비고
		- 해당 없음 -		

4. 기타 제한사항

순위	청구금액(원)	권리자	설정일자	비고
		- 해당 없음 -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	------------------------------



본건 전경 - 서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 - 북측에서 촬영



주위 환경 - 본건 동측



주위 환경 - 본건 서측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7 외 11필지
-----	------------------------------



주위 환경 - 본건 남측



주위 환경 - 본건 북서측



본건 내부 - 서측 방향



부합물 및 중물 ㄱ)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251222-00-039

(주)신한저축은행 귀하

이백육십삼만일천이백원정 (₩2,631,200.-)

2025-01-13 일자로 의뢰하신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47-9 외 11필지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가.평가수수료	2,258,795	(하한율 적용(0.8) $3,566,000 + (1,699,270,000 \times 7/10,000 \times 0.8) \times 0.5$)
나.여 비	109,400	가평군 설악면
토지조사비	-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 12,000 / 토지등기부 8,400 【기타 실비】 사진 2장 x 2,000원 = 4,000원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20,40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4,000	
특별용역비	-	
소 계	133,80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2,392,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239,200	
총 계	2,631,2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2,631,2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1222-00-03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120-86-05531 (세금계산서문의:TEL 02-2182-8080)

★ 계 좌 번 호 ★

◆ 신한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 347-09-13-0002583 예금주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김도곤



(TEL. : 02-2182-8000 FAX. : 02-558-0440)